



법원공보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제1424호

| 법원행정처 |

● 목 차

규 칙	70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706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711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71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내 규	719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예 규	720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722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728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일부개정예규
	729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750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779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786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788	
인 사	790	
공지사항	795	

● 규 칙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62호 2013. 5. 1.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74조의2제4항”을 “법제7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74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74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기관의 장”을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으로 한다.

별표 2의 환수금의 적용대상란 중 “1. 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해당자”를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해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의2제4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③ (생략)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자

2.~5. (생략)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자

2.~5.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

현 행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생략)
-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u>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u>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 3. 생략	
정산금	생략	

개 정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u>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u>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 3. 생략	
정산금	생략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63호 2013. 5. 1. 공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총 계	14,573인
경력직 계	12,267인
특정직 계	70인
법원행정처장	1인
법원행정처차장	1인
사법연수원장	1인
사법연수원부원장	1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인
사법연수원 교수	65인
일반직 계	9,248인
법원관리관(1급)	1인
법원이사관(2급)	14인
법원부이사관(3급)	38인
기술부이사관(3급)	1인
법원부이사관(3급) 또는 법원서기관(4급)	20인
법원서기관(4급)	338인
법원서기관(4급) 또는 비서관(4급상당)	1인

법원서기관(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3인
법원서기관(4급) 또는 조사서기관(4급)	1인
기술심리서기관(4급)	15인
사서서기관(4급)	2인
기술서기관(4급)	2인
법원서기관(4급) 또는 법원사무관(5급)	101인
전산서기관(4급) 또는 전산사무관(5급)	1인
기술서기관(4급) ·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
기술서기관(4급) · 기계사무관(5급) · 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9인
법원사무관(5급)	859인
법원사무관(5급) 또는 등기사무관(5급)	29인
법원사무관(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3인
법원사무관(5급) 또는 조사사무관(5급)	47인
전산사무관(5급)	8인
통계사무관(5급)	1인
경위사무관(5급)	7인
기술심리사무관(5급)	2인
사서사무관(5급)	6인
통역사무관(5급)	1인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5인
기계사무관(5급) · 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
법원주사(6급)	1,678인
조사주사(6급)	24인
전산주사(6급)	43인
통계주사(6급)	1인
경위주사(6급)	37인
사서주사(6급)	26인
토목주사(6급) 또는 건축주사(6급)	7인
기계주사(6급) 또는 전기주사(6급)	11인
보건주사(6급)	1인
화학주사(6급)	2인

법원주사보(7급)	1,220인
법원주사보(7급) 또는 등기주사보(7급)	46인
조사주사보(7급)	42인
전산주사보(7급)	21인
경위주사보(7급)	34인
사서주사보(7급)	12인
기계주사보(7급) 또는 전기주사보(7급)	1인
보건주사보(7급)	4인
법원서기(8급)	2,434인
법원서기(8급) 또는 등기서기(8급)	200인
전산서기(8급)	3인
통계서기(8급)	2인
경위서기(8급)	144인
사서서기(8급)	12인
전기서기(8급)	9인
화학서기(8급)	1인
법원서기보(9급)	1,380인
법원서기보(9급) 또는 등기서기보(9급)	180인
전산서기보(9급)	2인
통계서기보(9급)	1인
경위서기보(9급)	105인
사서서기보(9급)	4인
건축서기보(9급)	1인
기계서기보(9급)	7인
전기서기보(9급)	9인
기록연구사	2인
기능직 계	2,949인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속기실무장(기능6급)	24인
기계장(기능6급)	1인
전기장(기능6급)	1인
사무실무장(기능7급) 또는 속기실무장(기능7급)	56인

운전장(기능7급) 또는 관리장(기능7급)	2인
전기장(기능7급)	1인
통신장(기능7급)	1인
경비관리장(기능7급)	1인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8급)	20인
건축원(기능8급)	1인
기계원(기능8급)	1인
운전원(기능8급) 또는 관리원(기능8급)	3인
전기원(기능8급)	10인
통신원(기능8급)	1인
위생원(기능8급)	1인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
병기원(기능8급)	1인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9급)	2,138인
건축원(기능9급)	4인
기계원(기능9급)	66인
운전원(기능9급) 또는 관리원(기능9급)	357인
전기원(기능9급)	7인
위생원(기능9급)	127인
원예원(기능9급)	6인
경비관리원(기능9급)	117인
특수경력직 계	2,306인
정무직 계	2인
대법원장 비서실장	1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	1인
별정직 계	2,304인
재판연구관(2급상당)	3인
비서관(2급상당)	1인
비상계획관(2급상당)	1인
재판연구관(3급상당)	7인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1인

비서관(5급상당)	1인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7인
비서(6급상당)	2인
비상계획담당(6급상당)	20인
촬영담당(6급상당)	1인
자료담당(6급상당)	1인
비서(7급상당)	14인
비서(8급상당)	6인
비서(9급상당)	13인
법원경비관리대원(9급상당)	226인
사법연수생	2,000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 생 략 〉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속기실무장(기능6급)	25인
〈 생 략 〉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8급)	19인
〈 생 략 〉	
위생원(기능8급)	2인
〈 생 략 〉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9급)	2,080인
〈 생 략 〉	
운전원(기능9급) 또는 관리원(기능9급)	347인
〈 생 략 〉	
위생원(기능9급)	195인
〈 생 략 〉	

개 정

[별표]

법원공무원정원표

〈 현행과 같음 〉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속기실무장(기능6급)	24인
기계장(기능6급)	1인
〈 현행과 같음 〉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8급)	20인
〈 현행과 같음 〉	
위생원(기능8급)	1인
〈 현행과 같음 〉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속기실무원(기능9급)	2,138인
〈 현행과 같음 〉	
운전원(기능9급) 또는 관리원(기능9급)	357인
〈 현행과 같음 〉	
위생원(기능9급)	127인
〈 현행과 같음 〉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규칙 제2464호 2013. 5. 1.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및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용역비의 출납·보관·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비 납부·관리 등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제7조(회계관리)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장 용역비의 집행 및 출급절차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제12조(출급청구 등)

- ①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용역비관리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출

납공무원은 보관금 취급점에 출금지시를 전 송한다.

- ③ 취급점은 출금지시에 따라 출금청구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금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4조(현금출납부 등)

-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할 용역비가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취급점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천징수내역서를 전산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부 등의 보존)

수입·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V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일 자	성 명	계약명 및 용역내용	배정금액	출급금액	잔 액
	일 계				
	누 계				

※ 배정금액은 법원행정처에서 최초로 배정받은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용역비 수불명세서

년 월 일

계약명 및 용역내용	배 정 금 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합 계				

※ 배정금액은 법원행정처에서 최초로 배정받은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월계표

년 월 일

지 원 금		건 수	금 액
개 별 계 좌	전 월 잔 액		
	배 정 금 액		
	금 월 지 금 액		
	금 월 잔 액		

※ 배정금액은 법원행정처에서 최초로 배정받은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원 천 징 수 내 역 서

○ ○ 세무서 소관

징수기간 :

계약명 및 용역내용	납 세 자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주민세	합 계
합 계					

법원행정처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규칙 제2465호 2013. 5. 1.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 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내 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438호 2013. 4. 2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체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가족항공료,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자료수집비는 연수의 종류, 연수기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비용의 지급)	제8조(비용의 지급)
① 국비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가족항공료,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자료수집비는 연수기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비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u>체재비</u> ,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가족항공료,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자료수집비는 연수의 종류, 연수기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예 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956호 2013. 4. 25. 결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출급·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급금의 종류 및 코드)

출급금의 종류는 “용역비”로 하고, 코드는 “52”로 한다.

제3조(코드번호 등의 등록)

법원코드 및 과코드에 관해서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별표 1 및 별표 3을 준용한다.

제4조(사건번호부여)

- ① 용역비 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번호는 “용역”으로 사용하고, 사건번호는 “0000용역00”으로 사용한다.
-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 ③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
- ④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사용

하도록 한다.

제5조(계좌개설)

- ① 법원행정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다.
- ② 용역비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보관금계정에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한다.
- ③ 법원행정처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2항의 계좌(사건번호)를 개설하여 야 한다.

제6조(집행잔액 등)

연도 말 기준으로 용역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취급점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에 납부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급지시)

- ① 법원행정처 용도담당은 지출원인행위서를 결재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 ② 출납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서에 의하여 취급점에 출급지시를 전송한다.

제8조(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출납공무원은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명령 등 출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건번호별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 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

일 97-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57호 2013. 4. 26. 결재)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수료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부 등·초본에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이하 "영수필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납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납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납부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따른 사무처리지침」4.).

8. 나.를 삭제한다.

1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수필증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기기사용의 경우 생략함)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 서식 및 별지 제6-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영수필증출납부

월 일		적 요	수 입		불 출		잔 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1. 법원행정처, 지방법원(총무과, 등기과) 지원, 등기소에 비치
2. 액면금액 구분에 따로 구분기장하고 따로 총괄기장함.
(별도, 인수증 또는 인도증 보관할 것)
예 : 수입, 대법원으로부터 인수, ○○지원에 불출등

[별지 제6-1호서식]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

○○월분

○○법원

구분 보고 기관	전 월 미 납	금 월 수 입									금 월 납 입	금 월 미 납	누 계												금 월 납 입	
		영 수 필 사 용	기 기 (영수 필표 사 용)	소 계	등기 수입 증지 판매	현금 납부	전자 납부	무인 발급 기납 부	기타	합 계			수 입 누 계													
													영 수 필 사 용	기 기 (영수 필표 사 용)	소 계	등기 수입 증지 판매	현금 납부	전자 납부	무인 발급 기납 부	기타	합 계	남 입 누 계				
본원																										
OO지원																										
OO지원																										
OO등기소																										

덧 붙 임 : 법원통계예규 부록제1호 보고레등제1호(월보) 등기사건표

기재요령 : 1. “영수필증사용”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영수필증을 첨부한 금액을, “기기(영수필표시)사용”에는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 금액을 각 기재한다. “기타”에는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수입금을 기재한다.

2. “전월미납”에는 전월수입금 중 지난 달에 납부하지 못하고 이번 달로 이월한 금액을, “금월미납”에는 금월수입금 중 이번 달에 납부하지 못하고 다음 달로 이월한 금액을 각 기재한다.

3. 금월수입 중 소계 및 수입누계 중 소계(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는 덧붙임 등기사건표의 등·초본등수수료의 합계 및 누계의 합계(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현황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종류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기타등기	인감카드 제발급	전자증명서 발급	합 계
현금납부	건수							
	수수료							
전자납부	건수							
	수수료							
무인발급기 납부	건수							
	수수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7. 수수료수납방법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부 등·초본에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이하 “영수필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6조 제1항)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이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동 규칙 제6조제3항). 8. 영수필증 및 등기수입증지의 발행관리 가. (생략) 나.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여 지방법원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배분하고, 지방법원은 일선 등기과·소의 수요에 대하여, 등기과·소에서는 일반인의 수요에 대하여 응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현황을 일계표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1. 비치장부 및 일계표 가. (생략) 나.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기기사용의 경우 생략함) 다. (생략)	7. 수수료납부방법 -----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6조제1항).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납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납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납부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6조제3항,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따른 사무처리지침」). 8. 영수필증의 발행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삭제> 11. 비치장부 및 일계표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수필증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기기사용의 경우 생략함) 다. (현행과 같음)

한글

[별지 제4호 서식]

영수필증 및 등기수입증지 출납부

[illegible]

[별지 제6-1호 서식]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

00월분

[illegible]

덧 붙임 : 법원통계예규 부록제1호 보고레등제1호(월보) 등기사건표

기재요령 : 1. “영수필증사용”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영수필증을 첨부한 금액을,

“기기(영수필표시)사용”에는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

금액을 각 기재하며, 모사전송에 의한 등초본 교부시 등초본 수수료는 “영수필증사용”이나

“기기(영수필표시)사용”에 기재하고, 전송료 등은 “모사전송료등”에 기재한다. “기타”에는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수입금을 기재한다.

2. ~ 3. (생략)

[별지 제6-3호 서식]

〈신설〉

개 정

[별지 제4호 서식]

영수필증 출납부

[illegible]

[별지 제6-1호 서식]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

00월분

[illegible]

덧 붙임 : 법원통계예규 부록제1호 보고레등제1호(월보) 등기사건표

기재요령 : 1. “영수필증사용”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영수필증을 첨부한 금액을,

"기기(영수필표시)사용"에는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 금액을 각

기재한다. “기타”에는 동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수입금을 기재한다.

2. ~ 3. (생략)

[별지 제6-3호 서식]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현황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종류	부동산등기	법인 등기	등산·채권 인보 등기	기타 등기	인간 기증 계발금	전자등명서 발급	합 계
행정 납부	전수								
	수주료								
전자 납부	전수								
	수주료								
무인 발급기 납부	전수								
	수주료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58호 2013. 4. 26. 결재)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라.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고서의 제출

(1)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 현재의 등기

특별회계수입금 출납과 영수필증및등기신청수수료 출납현황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제6-1호, 제6-2호, 제6-3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분을 종합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5.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운영규정)

가. 삭제(2006.12.12. 제687호)

나. 삭제(2007.12.20. 제731호)

다. 삭제(2006.12.12. 제687호)

라. 보고서의 제출

(1)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말 현재의 등기특별회계수입금 출납과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운영규정 제6-1호서식과 제6-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분을 종합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5.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운영규정)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보고서의 제출

(1) -----
-----영수필증및등기신청수수료출납현황을-----
-----제6-1호, 제6-2호, 제6-3호
서식에 따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959호 2013. 4. 26. 결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
 2.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규칙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사람
- ④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⑥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협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 ① 법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부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5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제18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 ①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

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2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21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

- 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2조(통지시기 및 항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3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3조(통지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제22조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개인정보 유출신고)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신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5조(개인정보 열람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열람연기의 통지, 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

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 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정지 조치를 하였거나 또는 처리정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 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 · 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3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2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절차

제34조(개인정보파일 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법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법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처리되

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3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현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받는 자
 7.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의 명칭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제3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법원행정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 ①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표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의 삭제)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등록사실의 삭제를 요청한다.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한다.

제41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 ①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③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각급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42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 법원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상회할 수 없다.

- ③ 정책 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4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②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5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〇 귀하

작성 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원	원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60호 2013. 4. 2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2. 중 “(대법원규칙 제2321호, 2011. 1. 31. 공포)”를 “(대법원규칙 제2457호, 2013. 4. 11. 공포)”로 한다.

Ⅱ. 1. 마. (2) 및 *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Ⅱ. 3. 다. ○ 가산금 중 첫 번째 * 이후에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지급기준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Ⅱ. 3. 라. (3)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관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Ⅱ. 3. 아. (2) ○ 자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녀 : 1인당 월 60달러(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Ⅱ. 4. 가. 및 예시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중학교 ·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중 ·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Ⅱ. 4. 가. (2) 중 “졸업한 사람과”를 “졸업한 사람과”로 하며,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0개교, 2010.4.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0개교,
2012.4.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진국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대 만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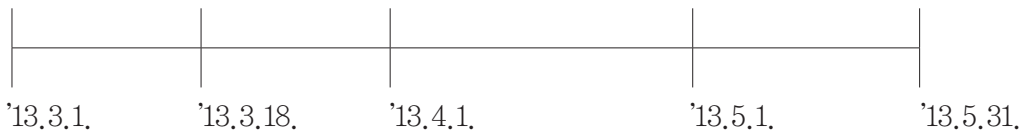
Ⅱ. 4. 나.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Ⅱ. 4. 나. (3) 중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한다.

Ⅱ. 4. 마. (2) 중 “중학교 ·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Ⅱ. 4. 마. (3) 중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시 >

○ 지급사유발생(甲의 경우)

법관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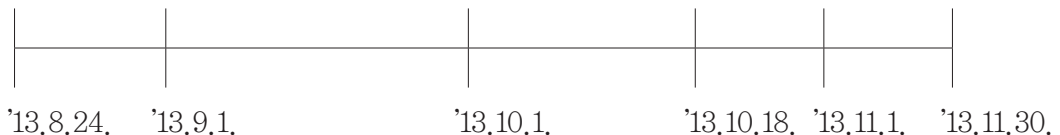


-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13. 3. 18.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3. 3월에 발생하였으나,
- '13. 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13. 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제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 수급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3. 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13. 10. 18. 의원면직됨
- '13.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 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13. 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Ⅱ. 4. 사. (5) 예시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으로 한다.

Ⅱ. 4. 아. (1) 예시 중 “(중학생)“을 각각 “(고등학
생)“으로 한다.

Ⅱ. 5.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징수

소속 법관이 육아휴직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
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9. 다.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중 “- 2월 12
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을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규칙 제
17조에 해당하는 임기만료·정년·명예·조기·
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으로 한다.

Ⅱ. 9. 다. 예시의 두 번째 ○ 부분 중 “직급·호봉
으로”를 “직급·호봉을”로 한다.

Ⅱ.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가보상비(규칙 제11조의6)

가. 지급대상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

(1) 지급제외자

(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
파견 법관(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국외파견 법관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
하게 된 경우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

를 위한 국외파견 법관은 지급대상에 포함)

(나) 연도 중 파면된 법관

(다)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퇴직
된 법관

(2)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
정·운영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말에 연가보
상비 정산·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
는 경우 해당 기관 정원의 50% 미만 범위에서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외 대상자 지정순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순서
에 따르되,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수정하여 지정
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 ①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필수)
- ②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근거해 파견근무 중인 자
- ③ 하반기(7.1.~12.31.) 중 퇴직 예정자
- ④ 하반기(7.1.~12.31.) 중 휴직 예정자
- ⑤ 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
측되는 경우

나. 관련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및 제82조의1

다. 지급액

(1)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법관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 법관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1/30×5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 (12월 31일 기준 월봉급액의 86%×1/30×3일)-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

관은 99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함

(나)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해당 연도 중 승급으로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text{미사용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 - \text{제외기간(개월)}}{12\text{개월}}$$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

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81조(연가일수) 및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정직,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제외기간 :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함)

(예)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도 중 지원하여 부서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라.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법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

합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 참 고 사 항 >

『법원공무원규칙』제81조 및 제82조의1]

제81조(연가일수)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3년이상 4년미만	14
6개월이상 1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17
1년이상 2년미만	9	5년이상 6년미만	20
2년이상 3년미만	12	6년이상	21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참 고 사 항 >

$$\rightarrow \text{공제할 연가일수} = \frac{\text{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예 시 >

- 연가일수가 21일인 법관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 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3.6.30기준 10호봉이었으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11호봉임)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 5일분 728,060원($5,079,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728,060\text{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901,980원(에 서($5,24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6 = 901,98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728,060 원을 제외한 173,920원을 지급함
- 연가일수가 23일인 법관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 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3.6.30기준 10호봉이었으 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11호봉임)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 보상비 5일분 728,060원($5,079,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728,060\text{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50,990원(에 서($5,24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450,99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728,060 원을 제외한 277,070원을 환수함
-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 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 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 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 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1일이 되고, 병가 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 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 1일과 병가 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인 1개월을 합산 하면 2개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 교육, 4월 2주 교육, 8월 2주 교육) 제외기간 포함 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 교육(28일) 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예 시 >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 이상의 교육과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 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기간을 2개월로 계산함
-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법관이 '13.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3.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3.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1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법관이 '13.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3.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3.6.30기준 10호봉이었으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11호봉임)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728,060원($5,079,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728,060\text{원}$)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공제일수 7일[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월(4개월)/12개월 $\times$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 7일]을 제하고 남은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 일에는 12.31. 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450,990원에서($5,24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450,99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728,060원을 제외한 277,070원을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3.6.30일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3.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예 시 >

(‘13.6.30기준 13호봉이었으며 ‘13.8.30에도 월봉금액은 동일함)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14일)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813,250원($5,673,9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813,250\text{원}$)을 지급함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 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7일+3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 11일에 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월할계산($11\text{일} \times (8\text{개월}/12\text{개월})$)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되며, 퇴직일 전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301,210원($5,673,9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8 = 1,301,210\text{원}$)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813,250원을 제외한 487,960원을 지급함

Ⅲ. 3. 라. (1) (가) 중 “원예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원예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으로 한다.

Ⅳ. 2.와 Ⅳ. 2. 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Ⅳ. 3. 중 “(2011. 2. 7. 대법원행정예규 제881호)”를 “(2011. 8. 24. 대법원행정예규 제901호)”로 한다.

Ⅳ. 5. 마. 및 바. 중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각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I. 목적 및 근거

1. (생략)

2.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21호, 2011. 1. 31. 공포),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대법원규칙 제2193호, 2008. 9. 26.공포)

3. (생략)

II.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 (생략)

1. 정근수당(규칙 제7조 및 별표 1)

가. ~ 라. (생략)

마. 근무연수계산

(1) (생략)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하 (생략)

3. 가족수당(규칙 제9조 및 별표 5)

가. ~ 나. (생략)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산금 :

개 정

I. 목적 및 근거

1. (현행과 같음)

2.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57호, 2013. 4. 11. 공포),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대법원규칙 제2193호, 2008. 9. 26.공포)

3. (현행과 같음)

II.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 (현행과 같음)

1. 정근수당(규칙 제7조 및 별표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근무연수계산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하 (현행과 같음)

3. 가족수당(규칙 제9조 및 별표 5)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산금 :

현 행

* “셋째자녀부터”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20세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신 설〉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이 하 (생 략)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 (2) (생 략)

(3) 직계비속

(가) ~ (나) (생 략)

(다) 법관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법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법관이 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자녀양육까지 하고 있어 당해 법관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하 (생 략)

아.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의 경우(이하 “재외법관”이라한다. 다만,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등 파견법관은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 정

* “셋째자녀부터”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20세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지급기준 >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이 하 (현행과 같음)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 (2) (현행과 같음)

(3) 직계비속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관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이 하 (현행과 같음)

아.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의 경우(이하 “재외법관”이라한다. 다만,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등 파견법관은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

현 행

- (1) (생 략)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녀 : 1인당 월 60달러

이 하 (생 략)

4. 자녀학비보조수당(규칙 제10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법관은 제외)

- (1) (생 략)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생 략)

<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0개교, 2010.4.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자료) >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 한국 학교	대 만	타이베이 한국 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한국 학교
	교토 국제 학교		고웅 한국 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 학교
	오사카 금강 학교				
	오사카 건국 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 국제 학교	브라질
중 국	북경 한국 국제 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국 학교	러시아	모스크바 한국 학교
	상해 한국 학교				
	연변 한국 학교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 학교	사우디 아라비아	젯다 한국 학교
	천진 한국 국제 학교		하노이 한국 학교	리야드 한국 학교	
	홍콩 한국 국제 학교	태 국	방콕 한국 국제 학교	이 란	테헤란 한국 학교
	연대 한국 학교				
	대련 한국 국제 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 한국 학교	이집트	카이로 한국 학교
	선양 한국 국제 학교				
	무석 한국 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 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 국제 학교
	칭다오 청운 한국 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개 정

- (1) (현행과 같음)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녀 : 1인당 월 60달러(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하 (현행과 같음)

4. 자녀학비보조수당(규칙 제10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법관은 제외)

- (1) (현행과 같음)
 (2)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현행과 같음)

<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0개교, 2012.4.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자료) >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 한국 학교	대 만	타이베이 한국 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한국 학교
	교토 국제 학교		까오슝 한국 국제 학교	브라질	브라질 한국 학교
	오사카 금강 학교				
	오사카 건국 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 국제 학교	러시아
중 국	북경 한국 국제 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국 국제 학교	사우디 아라비아	젯다 한국 학교
	연변 한국 학교			리야드 한국 학교	
	천진 한국 국제 학교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 국제 학교	이 란	테헤란 한국 학교
	상해 한국 국제 학교		하노이 한국 국제 학교		
	무석 한국 학교	태 국	방콕 한국 국제 학교	이집트	카이로 한국 학교
	홍콩 한국 국제 학교				
	연대 한국 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 한국 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 국제 학교
	칭다오 청운 한국 학교				
	대련 한국 국제 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 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 국제 학교
	선양 한국 국제 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현 행

(3) ~ (4) (생략)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
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생략)

< 예 시 >

- 체육특기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 국내에 있는
- 국내에 근무하는 법관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에 근무하는 법관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

< 예 시 >

(생략)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 해당 법관의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개 정

(3) ~ (4) (현행과 같음)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
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현행과 같음)

< 예 시 >

-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 국내에 있는
- 국내에 근무하는 법관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에 근무하는 법관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

< 예 시 >

(현행과 같음)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 해당 법관의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현 행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학교)

○ 해당 법관의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법관의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 예 시 >

(생략)

다. ~ 라. (생략)

마. 지급방법

(1) (생략)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생략)

(3) (생략)

개 정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 해당 법관의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법관의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 예 시 >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급방법

(1) (현행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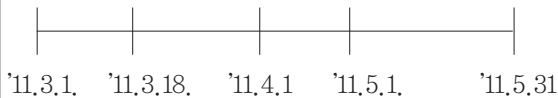
(3) (현행과 같음)

현 행

< 예 시 >

○ 지급사유발생(甲의 경우)

법관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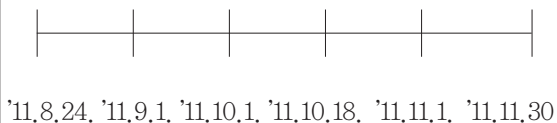
– 중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11. 3. 18.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1. 3월 에 발생하였으나,

– '11. 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11. 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1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 수급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1. 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11. 10. 18. 의원면직됨

– '11.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 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11. 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생 략)

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의 경우(이하 “재외법관” 이라한다)

(1) ~ (4)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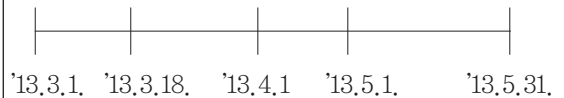
(5) 기타의 경우(재외법관 또는 규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 정

< 예 시 >

○ 지급사유발생(甲의 경우)

법관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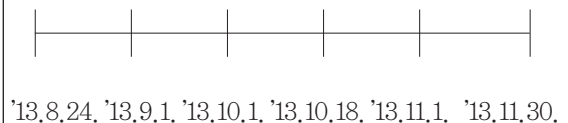
–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13. 3. 18.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3. 3월 에 발생하였으나,

– '13. 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13. 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제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 수급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3. 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13. 10. 18. 의원면직됨

– '13.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 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13. 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현행과 같음)

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의 경우(이하 “재외법관” 이라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의 경우(재외법관 또는 규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

현 행

< 예 시 >

○ 규칙 제5조에

- 규칙 제5조에 의한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 법관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동수당은 국내법관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아.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1) (생략)

< 예 시 >

○ 전남편의 자녀(중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법관(A)이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법관 또는 공무원(B)과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란 법관 또는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이혼한 여자법관 또는 여자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자녀(중학생), B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
- 또한,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방법처럼 부부 중 1인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夫)와 A(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법관 또는 공무원에게 A자녀와 B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모두 지급함

이 하 (생략)

5. 육아휴직수당(규칙 제10조의2)

가. ~ 라. (생략)

<신설>

개 정

< 예 시 >

○ 규칙 제5조에

- 규칙 제5조에 의한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 법관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동수당은 국내법관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아.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1) (현행과 같음)

< 예 시 >

○ 전남편의 자녀(고등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법관(A)이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법관 또는 공무원(B)과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란 법관 또는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이혼한 여자법관 또는 여자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자녀(고등학생), B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
- 또한,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방법처럼 부부 중 1인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夫)와 A(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법관 또는 공무원에게 A자녀와 B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모두 지급함

이 하 (현행과 같음)

5. 육아휴직수당(규칙 제10조의2)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징수

소속 법관이 육아휴직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거짓

현 행

6. ~ 8. (생 략)
 9. 명절휴가비(규칙 제11조의4)
 가. ~ 나. (생 략)
 다. 지급시기
 ○ (생 략)
 ○ (생 략)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예 시 >

- (생 략)
 ○ 규칙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 호봉으로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10호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생 략)
 ○ (생 략)

10. (생 략)
 11. 연가보상비(규칙 제11조의6)
 이 하 (생 략)

개 정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 8. (현행과 같음)
 9. 명절휴가비(규칙 제11조의4)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급시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임기만료 · 정년 · 명예 · 조기 · 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예 시 >

- (생 략)
 ○ 규칙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10호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생 략)
 ○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연가보상비(규칙 제11조의6)
 가. 지급대상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

현 행

개 정

(1) 지급제외자

(가) 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규칙 제5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법관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 법관은 지급대상에 포함)

(나) 연도 중 파면된 법관

(다)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퇴직된 법관

(2)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 운영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말에 연가보상비 정산 · 환수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기관 정원의 50% 미만 범위에서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외 대상자 지정순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순서에 따르되,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 · 수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 ①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필수)
- ②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근거해 파견근무중인 자
- ③ 하반기(7.1.~12.31.)중 퇴직 예정자
- ④ 하반기(7.1.~12.31.)중 휴직 예정자
- ⑤ 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 ·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나. 관련규정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및 제82조의1

다. 지급액

(1) 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법관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해당 법관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연가보상비〉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times 1/30 \times 5$ 일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 (12월 31일 기준 월봉급액의 86% $\times 1/30 \times 3$ 일)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

현 행

개 정

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다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함

(나)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해당 연도 중 승급으로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text{미사용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 - \text{제외기간(개월)}}{12\text{개월}}$$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

현 행

개 정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81조(연가일수) 및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정직,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제외기간 :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함)

(예)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도 중 지원하여 부서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시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라.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법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현 행

개 정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복무관리사항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 참 고 사 항 >

『법원공무원규칙』제81조 및 제82조의1]

제81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3년이상 4년미만	14
6개월이상 1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17
1년이상 2년미만	9	5년이상 6년미만	20
2년이상 3년미만	12	6년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 행

개 정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 ·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82조의1(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rightarrow \text{공제할 연가일수} = \frac{\text{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 예 시 >

- 연가일수가 21일인 법관이 6월 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3.6.30기준 10호봉이었으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11호봉임)
-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728,060원($5,079,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728,060\text{원}$)을 지급함
-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901,980원에서($5,24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6 = 901,98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728,060원을 제외한 173,920원을 지급함
- 연가일수가 23일인 법관이 6월 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3.6.30기준 10호봉이었으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11호봉임)
-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728,060원($5,079,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728,060\text{원}$)을 지급함
-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50,990원에서($5,24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450,99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728,060원을 제외한 277,070원을 환수함
-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 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1

현 행

개 정

일이 되고, 병가 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 1일과 병가 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인 1개월을 합산하면 2개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 교육, 4월 2주 교육, 8월 2주 교육) 제외기간 포함 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 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 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기간을 2개월로 계산함

○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법관이 '13.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3.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3.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1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현 행

개 정

< 예 시 >

○ 연가일수가 21일인 법관이 '13.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3.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3.6.30기준 10호봉이었으나, '13.8.1로 호봉승급하여 '13.12.31기준 11호봉임)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728,060원($5,079,5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728,060\text{원}$)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공제일수 7일[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월(4개월)/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 7일]을 제하고 남은 14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 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450,990원에서($5,244,1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3 = 450,990\text{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728,060원을 제외한 277,070원을 환수함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3.6.30일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3.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3.6.30기준 13호봉이었으며 '13.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 6월 30일 기준으로 미사용연가일수(14일)가 10일 이상이므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813,250원($5,673,9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5 = 813,250\text{원}$)을 지급함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 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7일+3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 11일에 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 수에 따라 월할계산($11\text{일} \times (8\text{개월}/12\text{개월})$)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되며, 퇴직일 전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301,210원($5,673,900\text{원} \times 86\% \times 1/30 \times 8 = 1,301,210\text{원}$)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813,250원을 제외한 487,960원을 지급함

현 행
12. (생 략)
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
1. ~ 2. (생 략)
3. 특수업무수당(규칙 제15조)
가. ~ 다. (생 략)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의 수당
(가) 지급대상 :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사 무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 시설·공업 및 보 건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중 시설, 공업, 통신, 보건, <u>원예직군에 속하는 직 렬의 공무원</u>
이 하 (생 략)
Ⅳ.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생 략)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u>〈신 설〉</u>
가. 법관인 경우
이 하 (생 략)
3. 대우공무원수당(법원공무원의 경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 예규」(2011. 2. 7. 대법원행 정예규 제881호) 참조
4. (생 략)
5. 기타사항
가. ~ 라. (생 략)
마.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당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 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

개 정
12. (현행과 같음)
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
1. ~ 2. (현행과 같음)
3. 특수업무수당(규칙 제15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 규칙 별표 9의 제1호 1)의 수당
(가) 지급대상 : 법원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사 무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 시설·공업 및 보 건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중 시설, 공업, 통신, 보건, <u>원예직군에 속하는 직 렬의 공무원(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u>
이 하 (현행과 같음)
Ⅳ. 수당등의 지급방법
1. (현행과 같음)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u>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 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 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u>
가. 법관인 경우
이 하 (현행과 같음)
3. 대우공무원수당(법원공무원의 경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 예규」(2011. 8. 24. 대법원 행정예규 제901호) 참조
4. (현행과 같음)
5. 기타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당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 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

현 행

리지침을 준용한다.

바. 청원경찰 및 조사위원은 법원공무원이 아니므로 동 지침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 청원경찰 :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특수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조사위원 : 예산의 범위에서 「판례심사위원회 규칙」과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사. (생략)

개 정

침을 준용한다.

바. 청원경찰 및 조사위원은 법원공무원이 아니므로 동 지침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 청원경찰 :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특수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조사위원 : 예산의 범위에서 「판례심사위원회 규칙」과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사. (현행과 같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61호 2013. 4. 29.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2. 가. 중 “징계의결”을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로 한다.

Ⅱ. 3. 아. (1) (나) 및 (다)를 각각 (라) 및 (마)로 하고, Ⅱ. 3. 아. (1)에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Ⅱ. 3. 아. (1) (라){종전의 (나)}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Ⅱ. 3. 아. (1) (마){종전의 (다)}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한다.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Ⅱ. 3. 아. (3) (가) 중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를 각각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으로,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 부분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Ⅱ. 3. 아. (3) (나) 중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률”을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률”으로 하고,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규칙 9조의3, 별표2)의 환수금의 적용대상란 중 “1. 법 제74

조의2제3항제1호 해당자”를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해당자”로 한다.

Ⅱ. 3. 아. (5) 중 “지급기관의 장”을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기재상 주의사항 : 신청자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신청자 기재란	①소 속		②종 무 원 분	☐ 법 관 ☐ 일반직 ☐ 기능직	③직(계)급 (호봉)	
	④성 명	한 글	⑤주민등록번호			
		한 자	⑥주 소	□□□-□□□		
	⑦전 화 번 호			⑧근 속 기 관	년 월	⑨정 년 일
⑩비 위·형벌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처분 요구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선고형 :)			
소속기관 기재란	⑪정 년 구 분		☐ 연령정년	☐ 임기만료	⑫정 년	(세 · 년)
	⑬정 년 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⑮비 위·형 벌 사 항 확 인	☐ 있 음 ☐ 없 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처분 요구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형량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선고형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형량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선고형 :)			
		확인	인사 담당	(인)	연금 담당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⑮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②란은 해당란(□)에 √표시함
2. ⑧란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4. ⑪란은 해당란에 √표시함
5. ⑬란은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6. ⑪~⑮란은 해당기관의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⑫란은 연령정년 및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세 또는 년)
7. ⑮의 확인은 동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 유의사항

- 명예퇴직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 명단(년 상·하반기)

명퇴 시 소속 기관	직종	직급 (계급)	성명	생년 월일	명 예 퇴 직 일	정 년 예 정 일	명예 퇴직 수당 액 (원)	환 수 사 유	환 수 금 액	재임용 기관				비고
										부 처	직 종	직 급 (계 급)	재 임 용 일	

※ 환수사유 및 환수금액

- 1호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전액환수
- 1호의2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전액환수
- 1호의3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전액환수
- 2호 :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퇴수당지급액 - 명퇴 후 재임용까지의 경과기간에 해당되는 명퇴수당지급액}을 환수
- 3호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초과지급분 또는 전액환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환수금 산정 시 월봉급액 적용기준은 명예퇴직당시의 월봉급액 산정기준에 따름

※ MS-Excel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I. (생 략) II. 명예퇴직수당 1. (생 략)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나.~사. (생 략)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사. (생 략) 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가) (생 략) (나) <u>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u> (다) <u>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u>	I. (현행과 같음) II. 명예퇴직수당 1. (현행과 같음)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가. <u>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u> 나.~사. (현행과 같음) 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가.~사. (현행과 같음) 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1) 환수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u>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u> (다) <u>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u> (라) <u>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u>

현 행

(2) 환수금 : 규칙 제9조의3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바에 의함.

(3) 환수절차

(가)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지급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경찰청, 검찰청 등에 형벌사실의 확인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었는지를 확인

(나)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환수기관 :

개 정

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마)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2) 환수금 : 규칙 제9조의3에 의한 “별표 2”에 정한 바에 의함.

(3) 환수절차

(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함.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지급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 경찰청, 검찰청 등에 형벌사실의 확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었는지를 확인

(나)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환수기관 :

현 행

- 환수금 산정 :
- 환수금 산정 시
- 환수절차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환수금 연체 시 적용이율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규칙 9조의3, 별표2)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 해당자	(생 략)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생 략)
	3. 법 제74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생 략)
정산금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 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생 략)

비고

(생 략)

(4) (생 략)

(5) 환수 조치결과 보고

지급기관의 장은 환수절차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환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개 정

- 환수금 산정 :
- 환수금 산정 시
- 환수절차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환수금 연체 시 적용이율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규칙 제9조의3, 별표 2)〉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 · 제1호의2 · 제1호의3 해당자	(현행과 같음)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현행과 같음)
	3. 법 제74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현행과 같음)
정산금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 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환수 조치결과 보고

환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환수절차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환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962호 2013. 5. 8.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직군 토목·건축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4. 공업직군 기계·전기·화학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환경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급 일반직공무원

제18조제1항 중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및 사서직렬 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을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사서·토목·건축·기계·전기·화학·보건·환경직렬 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일반직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및 사서직렬 6급·7급·8급,”을 “일반직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사서·토목·건축·기계·전기·화학·보건·환경직렬 6급·7급·8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규칙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정할 때 법원행정처장은 재직기간 분포 및 승진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직렬별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 ② (생략)

1. ~ 2. (생략)

〈신설〉

개 정

제6조(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조(목적 및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시설직군 토목·건축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현 행

3. (생 략)

제18조(승진임용 등)

- ①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및 사서직렬 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기능7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 ②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직렬 및 사서직렬 6급·7급·8급, 기능직 기능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개 정

4. 공업직군 기계·전기·화학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5. 보건직군 보건·환경직렬 6급·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8조(승진임용 등)

① -----

---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사서·토목·건축·기계·전기·화학·보건·환경직렬 7급·8급·9급 일반직공무원, -----
-----.

② ----- 일반직 조사사무·전산·법원경위·사서·토목·건축·기계·전기·화학·보건·환경직렬 6급·7급·8급,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신법령 목록 (2013. 4. 16. ~ 4. 30.)

【조약】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조약제2133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	2013. 4. 24	18002 (그2)	2
조약제2134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	44
조약제21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2013. 4. 25	18003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49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4. 16	17996	4
대통령령제2449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24500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	"	7
대통령령제24501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 4. 18	17998	4
대통령령제24502호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 4. 22	18000	4
대통령령제24503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2450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4505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245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	29
대통령령제24508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2450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24510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451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2451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2451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2451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24515호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8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제2451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4.22	18000	59
대통령령제2451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24518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4.26	18004	5
대통령령제24519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부령】

법무부령제78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4.16	17996	9
안전행정부령제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농림축산식품부령제2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농림축산식품부령제27호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	31
해양수산부령제25호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	31
안전행정부령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정정	"	"	39
보건복지부령제193호	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4.17	17997	3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4.18	17998	4
안전행정부령제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4.22	18000	61
보건복지부령제194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	"	62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4.23	18001	3
안전행정부령제8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보건복지부령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미래창조과학부령제2호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4.24	18002	4
고용노동부령제8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국토교통부령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3.4.25	18003	34
여성이족부령제37호	여성이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	37
미래창조과학부령제3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3.4.29	18005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4.30	18006	3
산업통상자원부령제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인 사

인사발령 법 제49호

2013. 4. 1.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지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이정환(李政桓)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함

(2013. 4. 8.자)

인사발령 법 제53호

2013. 4. 9.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검사장			
	대법원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임권수(林權洙)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보함

(2013. 4. 10.자)

인사발령 법 제54호

2013. 4. 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한재상(韓在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4. 11.부터 2014. 2. 23.까지 휴직을 명함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이화용(李和容)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2013. 4. 10.자)

인사발령 법 제58호

2013. 4. 1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곽민섭(郭珉燮)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2013. 4. 18.자)

인사발령 법 제59호

2013. 4. 18.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지현(閔智絃)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5. 26.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용신(鄭容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5. 23.부터 2013. 7. 3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윤희(金倫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5. 25.부터 2013. 8. 24.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세준(金世竣)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4. 22.부터 2013. 10. 18.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방선옥(房善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5. 13.부터 2013. 8.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미경(金美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5. 6.부터 2013. 7. 5.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유현정(俞現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3. 5. 27.부터 2013. 8. 23.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승연(鄭丞娟)	2013. 5. 2.부터 2014. 2. 19.까지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2.복 직			휴직기간을 연장함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연(韓知燕)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3. 5. 1.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연주(金蓮珠)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13. 5. 6.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효신(李孝信)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3. 5. 12.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신영(金信榮)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13. 5. 31.자)

인사발령 법 제60호

2013. 4. 18.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고등법원장			
대법원		조용호(趙龍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지방법원장			
대법원		서기석(徐基錫)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4. 19.자)

인사발령 법 제62호

2013. 4. 22.

항	소속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전 보			
가. 검사			
대법원	김병구(金炳求)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함	
(대구지방법검찰청)			
대법원	김재호(金載浩)	〃	
(전주지방법검찰청)			
대법원	서종혁(徐鍾赫)	〃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013. 4. 23.자)

● 공지사항

◎ 4월 신착 법률·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4월분 법률도서(422책), 일반도서(11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v.27-3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2012	
法과 社會 v.43 /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박영사	2012	
法과 政策研究 v.12-3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2	
法과 政策研究 v.12-4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2	
法學論攷 v.41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	
法學研究 v.37 /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全北大學校 出版部	2012	
법학평론 v.3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제도: 제도취지와 지원사례 중심으로, 2012-상 / 한국·법제처	법제처	2012	
中國法研究 v.18 / 한중법학회	韓中法學會	2012	
大法典 v.2013-1 / 법전출판사	법전출판사	2013	
大韓民國 新法典 v.2013-1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大韓民國 新法典 별책부록: 別表·書式集 v.2013-2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民主法學 v.51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악사	2013	
法과 政策 v.19-1 /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濟州大學校	2013	
法典 v.2013-1 / 현암사	玄岩社	2013	
別冊附錄: 법률용어 색인·송부자료·각종수수료 v.2013-2 / 법전출판사	法典出版社	2013	
附錄集: 國際編·別表·補遺·民事訴訟法新舊對照表 v.2013-2 / 현암사	현암사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서강법률논총 v.2-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시선 v.3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2013	
一鑑法學 v.24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淸研論叢 v.10 /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3	
統一과 法律 v.13 / 법무부	법무부	2013	
判例研究 v.24 / 부산판례연구회	釜山判例研究會	2013	
比較法研究 v.74 / 比較法學會	有斐閣	2013	
神戸法學雜誌 v.62-1 / 神戸法學會	神戸法學雜誌	2012	
Comparative law in a global context : the legal systems of Asia and Africa / Menski, Wern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La) pensée juridique / Virally, Michel	Panthéon-Assas	2010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v.35-2 / (The) Buchmann Faculty of Law Tel Aviv University	Tel Aviv University	2012	
(The) justice system journal v.2012-3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2012	
TEL-AVIV University law review v.35-1 / (The) Buchmann Faculty of Law Tel Aviv University	Tel Aviv University	2012	
Yonsei law journal v.3-2 /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012	
Duke law journal v.62-5 / Duke university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Harvard law review v.126-5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3	
Kritische Justiz : KJ v.46-1 / Buckel, Sonja	Nomos	2013	
Michigan law review v.111-5 /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3	
Minnesota law review v.97-3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2013	
(The) modern law review v.76-2 / Anderson, J.S	Blackwell Publishers	2013	
Tulane law review v.87-3 /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UBC Law Review v.46-1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3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6-1 / Vanderbilt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Vanderbilt law review v.66-1 / Vanderbilt Uni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2013	
法理學 / 舒國滢	人民大學	2012	
法學概論 / 穀春德	人民大學	2012	
法學概論 / 夏錦文	人民大學	2012	
北大法律評論 v.13-1 / 北大法律評論編委會	北京大學出版社	2012	
中國法律 / 朱勇	政法大學	2012	

[법제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Introduction to Turkish law / Ansay, Tugru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v.45-4 / Krüger, Herbert	Nomos	2012	
款約法：黔東南苗族習慣法的歷史人類學考察 / 徐曉光	廈門大學出版社	2012	
官與民：中國傳統行政法制文化研究 / 範忠信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身分與契約：中國傳統民事法律形態 / 趙曉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中國法制史 / 郭建	高等教育出版	2012	
香港基本法解釋問題研究：以法理學為視角 / 白晔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언론조정중재편람 . 2009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09	
(2010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1	
Trade Dress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이수강	연세대학교	2012	
YGBL v.3-2 /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센터	2012	
개정 저작권법상 OSP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白惠隣	고려대학교	201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건설법무 연구 v.1-1 / 광운대학교 . 건설법무대학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12	
경쟁법상 조사방해 행위의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 장용석	연세대학교	2012	
공정거래형법의 불법과 형법정책 / 박혜림	고려대학교	2012	
공지공용기술이 포함된 발명의 지위에 관한 연구 / 강환진	연세대학교	2012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2012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관리처분계획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강신은	중앙대학교	2012	
국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 인제도의 활용과 개선에 대한 연구 / 정창원	연세대학교	2012	
국의 공동사업체의 국내진출에 대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박정민	연세대학교	2012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근목	연세대학교	2012	
기부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기부 및 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 김수	연세대학교	2012	
기업결합규제의 합리화방안 / 김규중	조선대학교	2012	
대형유통업체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金容重	고려대학교	2012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희원	고려대학교	2012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관한 과세체계 연구 / 유은순	연세대학교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李星男	고려대학교	2012	
사립대학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박혜민	연세대학교	201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아람	연세대학교	2012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이행 확보방안 / 박종연	단국대학교	2012	
산학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 이수진	연세대학교	2012	
상속·증여시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연구 : 양도소득세액공제 제안 / 진용수	연세대학교	2012	
상장법인의 자율공시 중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효율적 공시방안 연구 / 陳東華	고려대학교	2012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연구 : 자산의 고가 매입·저가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 이훈구	연세대학교	2012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과 개선 방안 / 김혜수	연세대학교	2012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 최인용	연세대학교	2012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검토 / 노재선	단국대학교	2012	
아동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이미영	단국대학교	2012	
언론분쟁 관련 국내외 논문 목록 . 2012.12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2	
위법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송기출	연세대학교	2012	
의료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김홍식	연세대학교	2012	
의료법학 v.13-2 /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일감 부동산법학 v.7 / 건국대학교 .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출판부	2012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사례 및 문제점 분석과 과징금 도입을 중심으로 / 옥선기	고려대학교	2012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시승	연세대학교	2012	
전기통신번호 관리에 관한 공법적 연구 / 金俸湜	고려대학교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전통지식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 권보경	단국대학교	2012	
中國 反獨占法과 韓國 公正去來法 比較 : 市場支配의 地位 濫用禁止를 中心으로 / 양천(Yang Chen)	전남대학교	2012	
증명표장의 식별력 획득을 위한 표장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 : 규격표시 증명표장을 중심으로 / 지재동	연세대학교	201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홍경표	연세대학교	2012	
지식재산연구 v.7-4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판매에 관한 법적 고찰 / 김세나	연세대학교	2012	
취약계층의 기업 창업 및 운영시 조세감면 개선에 관한 연구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심으로 / 박은서	연세대학교	201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정보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황지민	단국대학교	2012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동은	연세대학교	2012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연구 : 미국 특허법 제271조 (f)항을 중심으로 / 오상윤	연세대학교	201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실익과 한계에 관한 연구 / 양준호	조선대학교	2012	
헤지펀드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현정	연세대학교	2012	
현행 상속증여법상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 박미정	연세대학교	2012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임상은	고려대학교	2012	
IT와 法研究 v.7 /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0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방향 / 최인영	부산외국어대학교	2013	
경제 민주화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논의 배경 및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 이춘구	전북대학교	201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과 의무 : 특수한 유형의 OSP와 삼진아웃 제도를 중심으로 / 文一煥	부산대학교	2013	
사용자의 징계권과 징계처분의 변화 양상 / 박성수	부산대학교	2013	
창작과 권리 v.2013-1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정부공사계약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全顯澈	고려대학교	2013	
말산업 육성법 제정 의미와 향후 말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류재량	연세대학교	2013	
稅法典 : 参照式/法·令·規則·通則 v.2013 / 법률신문사	法律新聞社	2013	
稅法 v.2013 / 현암사	玄岩社	2013	
稅法·國際法 v.2013 / 법전출판사	法典出版社	2013	
조세법전 /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2013	
기업법연구 v.27-1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3	
勞動法學 v.45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動法學會	2013	
租稅學術論集 v.29-1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2013	
(別冊) パテント v.65-8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2	
(別冊) パテント v.66-9 / 日本弁理士會	日本弁理士會	2013	
金融商品取引法判例百選 / 有斐閣	有斐閣	2013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 v.41 / 北海道大學情報法政策學研究センター	北海道大學	2013	
(判例)特許、實用新案法. 第5卷: 審決取消訴訟: 實質(II) / 無體財産法研究会	新日本法規	2013	
Customs valuation : commentary on the GATT customs valuation code / Sherman, Saul L	ICC Pub	1988	
(Les) relations entre les institutions supérieures de contrôle financier et les pouvoirs publics dans les pays de l'union européenne / Flizot, Stéphanie	L.G.D.J	2003	
(L')arbitre, le juge et les pratiques illicites du commerce international / Alexandre Court de Fontmichel	Pantheon-Assas	2004	
Competition law in Denmark / Bertelsen, Erik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Energy law in Malaysia / Ansari, Abdul Haseeb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Environmental law in India / Naseem, Muhamma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Environmental law in Israel / Laster, Richar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Environmental law in Malaysia / Mustafa, Maizatun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France / Bouche, Nicola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India / Sen Gupta, Tamali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Environmental law in Norway / Bugge, Hans Christian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Competitio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 Kyung-Min, Koh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Bulgaria / Mrachkov, Vassi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China / Chen, Ke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France / Despax, Miche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Italy / Treu, Tiziano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Japan / Hanami, Tadashi A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New Zealand / Anderson, Gordon J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Russia / Goldman, Alvin 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abour law in Russia / Gorbacheva, Zhanna Anatolyevna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Medical law in Switzerland / Buchler, Andrea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Medical law in Turkey / Sert, Gurkan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Member states versus the European Union : the regulation of gambling / Littler, Ala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Social security law in India / Saini, Debi 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Sustainable waste trade under WTO law : chances and risks of the legal frameworks' regulation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s / Grosz, Mirin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Droit pénal fiscal / Lopez, Christian	L.G.D.J	2012	
Droit public économique / Colson, Jean-Philippe	L.G.D.J	2012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Denmark / Riis, Thoma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witzerland / Dessemontet, Francoi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建設工程監理基本理論與相關法規 / 杜貴成	化學工業出版社	2012	
建設工程法規 / 高會艷	化學工業	2012	
建設法規 / 祝連波	化學工業	2012	
建築市場監管法規文件彙編 / 住房和城鄉建設部建築市場監管司	中國建築工業	2012	
經濟法 / 王瑜	高等教育出版社	2012	
經濟法概論 / 漆國生	人民大學	2012	
經濟法概論 / 趙曉耕	人民大學	2012	
經濟轉型背景下的中小企業促進法研究 / 劉慶飛	北京大學出版社	2012	
科學發展與知識產權戰略實施 / 吳漢東	北京大學出版社	2012	
歐盟金融市場一體化及其相關法律的演進 / 齊紹洲	人民出版社	2012	
旅遊法教程 / 鄭晶	旅遊教育	2012	
物流法原理與案例教程 / 陳潔穎	對外經貿大學	2012	
西部內陸河流域管理法律制度研究 / 俞樹毅	科學出版社	2012	
城市建設中土地徵收法律制度研究 / 李朔	東北大學出版社	2012	
世界博覽會主辦國的法制創造： 遵循國際規則的機制與實踐 / 邱一川	上海人民出版社	2012	
實用環境影響評價相關法律法規彙編 / 實用環境影響評價相關法律法規彙編 編輯委員會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2	
專利法原理與案例 / 崔國斌	北京大學	2012	
專利許可合同的構造：判例，規則及中國的展望 / 董美根	上海人民出版社	2012	
中國環境法學評論：2012年卷,總第8卷 / 徐祥民	科學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中華人民共和國增值稅、營業稅暫行條例實施細則 解讀 與案例精解：最新法規 權威解釋 新舊對照 / 翟繼光	立信會計出版社	2012	
中華人民共和國現行稅收法規及優惠政策解讀： 2012年權威解讀版 / 中華人民共和國稅法典編委會	立信會計出版社	2012	
證券法學 / 李東方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知識產權法 / 吳漢東	政法大學	2012	
衡平稅法研究 / 張怡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環境資源法學 / 李永寧	政法大學	2012	
會展法規 / 杜娟	化學工業出版社	2012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WTO반덤핑협정의 동종성 연구 :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 이천기	고려대학교	2012	
국가면제의 예외에 관한 연구 : ICJ 국가관할권면제사 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장석영	고려대학교	2012	
국제거래 대금결제방식과 금융기관의 소송법상 지위 / 허성일	고려대학교	2012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연구 / 김청수	조선대학교	2012	
국제법상 사전주의원칙 : EU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 박지은	연세대학교	2012	
국제재판관할의 기본이념에 관한 연구 / 이연주	중앙대학교	2012	
국제환경법과 WTO법상 의무의 충돌 해소에 관한 연구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해석 규정의 적용을 중심으로 / 이경화	연세대학교	2012	
다문화사회에서의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보호 및 구제방안 / 차정은	연세대학교	2012	
독일 동부 국경선(오더-나이세-경제선)의 승인 문제에 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연구 / 조영주	연세대학교	2012	
몽골의 외국인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 엔크타이반 잡크랑	전북대학교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위안부 소녀상 테러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이시영	연세대학교	2012	
인권조약의 역외적용 가능성 / 이재강	연세대학교	2012	
중국 중재법 및 중국국제상사중재위원회(CIETAC)중재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궤	고려대학교	2012	
초국경적 기업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 / 김병준	건국대학교	2012	
한미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보호 제도 연구 / 최성열	중앙대학교	2012	
해적행위의 진압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이현지	단국대학교	2012	
중재연구 v.23-1 /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	2013	
Regulation of energy in international trade law : WTO, NAFTA and Energy Charter / Selivanova, Yulia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Migration law in the USA / Medina, Maria Isabe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5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1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6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2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7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2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8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12	
Droit du contentieux de l'union européenne / Molinier, Joel	L.G.D.J	2012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 Tome 351 de la collection , 2010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 Tome 352 de la collection , 2010 /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2012-4 / Lagarde, Paul	Dalloz	201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2012-4 / Desurmont, Thierry	Henry Lemoine	2012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2012-4 / Jacqué, Jean-Paul	Dalloz	2012	
國際科技合作知識產權保護與對策研究 / 畢克新	科學出版社	2012	
國際貿易救濟法律問題研究 / 朱廣東	東南大學出版社	2012	
國際犯罪學大師論犯罪控制科學：1 / 劉建宏	人民	2012	
國際犯罪學大師論犯罪控制科學：2 / 劉建宏	人民	2012	
國際法 / 王獻樞	政法大學	2012	
國際法 / 李毅	人民大學	2012	
國際法 / 楊澤偉	高等教育出版社	2012	
國際法析論 / 楊澤偉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國際私法學關鍵問題 / 杜煥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國際商法 / 韓玉軍	人民大學	2012	
國際商法 / 孫金剛	電子工業	2012	
國際商法 / 屈廣清	東北財經大學	2012	
國際知識產權爭議解決機制研究 / 鐘麗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國際貨物貿易法律風險與防範判例精解 / 蔣琪	對外經貿大學	2012	
論全球環境法的形成與實現 / 吳宇	科學出版社	2012	
中華人民共和國國際刑事司法協助法立法建議稿及論證 / 黃風	北京大學出版社	2012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유지의무와 손해 배상책임 / 金永起	고려대학교	2012	
국회규칙에 관한 연구 / 이성호	건국대학교	2012	
網 中立性에 관한 憲法的 研究 / 崔惠先	건국대학교	2012	
美國憲法研究 v.23-3 / 미국헌법연구소	海巖社	2012	
민간부문의 자율규제 확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연구 / 제갈문규	연세대학교	2012	
빅데이터 시대의 재무행정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池柳錫	고려대학교	2012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 이재희	고려대학교	2012	
자유권 보호영역의 범위와 한계 / 윤정인	고려대학교	2012	
중세시대의 종교적 관용의 발전 / 신우석	고려대학교	2012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 배소연	연세대학교	2012	
헌법상 익명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 김송옥	중앙대학교	2012	
헌법재판사건의견서 모음집 v.22 / 한국 . 법무부	법무부	2012	
젠더법학 v.4-2 /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2013	
Constitutions et pouvoirs : Mélanges en l'honneur de Jean Gicquel / Ameller, Michel	Montchrestien	2008	
(L')autorité de la chose interprétée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 Disant, Mathieu	L.G.D.J	2010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Austria : a contextual analysis / Stelzer, Manfred	Hart Pub	2011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KritV) v.95-4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2	
中國憲法學說史研究：上 / 韓大元	人民大學	2012	
中國憲法學說史研究：下, / 韓大元	人民大學	2012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경비업법의 개정을 위한 시론 : 직무와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 송수복	청주대학교	2012	
경찰개념의 재정립과 경찰권의 배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와 한국의 경찰법을 중심으로 / 박창호	단국대학교	2012	
부동산 국가소송 실무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2013	
司法警察과 檢察의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방안 연구 / 조재연	연세대학교	2012	
지방의회의 입법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박래학	건국대학교	2012	
土地公法研究 v.60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3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권 단속 사무를 중심으로 / 안정진	연세대학교	2012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 Tome 3 / De Laubadère, André	L.G.D.J	1997	
(La) contradiction dans la procedure administrative contentieuse / Gohin, Olivier	L.G.D.J	1988	
(De l')autonomi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françaises : essai sur la liberté du pouvoir normatif local / Joyau, Marc	L.G.D.J	1998	
Essai sur les contrats de travaux et de services publics : contribution à l'histoire administrative de la délégation de mission publique / Bezançon, Xavier	L.G.D.J	1999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 Tome 1 ,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 De Laubadère, André	L.G.D.J	2001	
(Les) services publics constitutionnels / De Bellescize, Ramu	L.G.D.J	2005	
Recherches sur la décentralisation dans l'oeuvre de maurice hauriou / Fournié, François	L.G.D.J	2005	
Contentieux administratif / Broyelle, Camille	L.G.D.J	2011	
(La) performance des contrôle de l'État sur les collectivités locales : sous la direction de Antoinette Hastings-Marchadier / Hastings-Marchadier, Antoinette	L.G.D.J	2011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administratif par le droit de l'union européenne : une contribution à l'étude du droit administratif européen / Sirinelli, Jean	L.G.D.J	2011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v.2012-6 / Dalloz	Dalloz	2012	
政府法制工作研究 / 陳洪波	湖北人民出版社	201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行政法規彙編：2011 / 人民出版社法律編輯室	人民出版社	2012	
行政法與行政訴訟法 / 馬懷德	政法大學	2012	
行政法學概要 / 胡建淼	浙江工商大學	2012	
行政訴訟和解研究 / 譚煒傑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과잉형벌의 시대와 형벌이론의 역할 / 安奈炫	고려대학교	2012	
부작위로서의 연명치료중단행위 / 김재경	중앙대학교	2012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으로 / 林采坤	경상대학교	2013	
사이버테러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박종열	연세대학교	2012	
중국사형제도개혁에 대한 연구 / 시이칭	고려대학교	2012	
형법상 작량감경의 이론과 현실 / 송영지	고려대학교	2012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윤현우	연세대학교	2012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한상민	전북대학교	2013	
기능적 행위지배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이수진	부산대학교	2013	
老人犯罪의 原因 分析 및 對策에 관한 研究 / 朴淑完	경상대학교	2013	
외국인범죄 재판참여 매뉴얼 : 2013 / 한국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防衛法研究 v.30 / 防衛法學會	内外出版	2006	
防衛法研究 v.31 / 防衛法學會	内外出版	2007	
防衛法研究 v.32 / 防衛法學會	内外出版	2008	
防衛法研究 v.33 / 防衛法學會	内外出版	2009	
防衛法研究 v.34 / 防衛法學會	内外出版	2010	
防衛法研究 v.35 / 防衛法學會	内外出版	2011	
Criminal law in Hong Kong / Wai-kin, Ho Victor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Criminal law in the USA / Broyles, D. Scott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經濟犯罪案件立案追訴標準與定罪量刑最新適用法律圖解 / 孟慶豐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12	
民生刑法：刑法修正案中的民生權益保障解讀 / 張勇	上海人民	2012	
中華人民共和國刑法的孕育誕生和發展完善 / 高銘暄	北京大學出版社	2012	
破壞環境資源保護罪研究 / 馮軍	科學出版社	2012	
判例刑法學：教學版 / 陳興良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被害人學新論 / 任克勤	廣東人民出版社	2012	
刑法司法解釋及規範性文件適用精解 / 陳國慶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12	
刑法修正案(八) 解讀與評析 / 王志祥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12	
刑法與民族習慣法的互動關係研究 / 蘇永生	科學出版社	2012	
刑法中的行為理論研究 / 劉士心	人民出版社	2012	
刑法學 / 曲新久	政法大學	2012	
賄賂犯罪刑法理論與實務 / 劉憲權	上海人民出版社	2012	
恢復性司法基本理念研究 / 吳立志	政法大學	2012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방문판매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를 중심으로 / 고석진	연세대학교	2012	
法人格否認理論에 관한 解釋論的 研究 / 박용호	조선대학교	2012	
保險者の 説明義務에 관한 法的 考察 : 情報提供義務의 導入을 통한 保險契約者 保護方案을 中心으로 / 金大熙	건국대학교	201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 진입규제와 운송요금규제를 중심으로 / 김정임	중앙대학교	2012	
예금보험사고시 예금채권자의 법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선엽	연세대학교	2012	
外國法人 國內 上場制度의 現況과 改善 方案에 관한 研究 / 이미현	연세대학교	2012	
워런트(Warrant)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金鍾鮮	고려대학교	2012	
議決權 代理行使와 代理行使 勸誘에 관한 研究 / 尹德鎭	고려대학교	2012	
自動車保險상 保險者の 免責事由에 關한 研究 : 無免許・飲酒免責 中心으로 / 金叡眞	중앙대학교	2012	
저축 및 재산이전 수단으로서의 보험계약 관련 과세 연구 : 장기 인보험을 중심으로 / 조중식	연세대학교	2012	
株式會社の 内部統制制度에 關한 研究 / 朴魯一	건국대학교	2012	
中國 會社法上 法人格否認說 / 崔蓮花	고려대학교	2012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책 : 특히 서면동의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 신윤정	고려대학교	2012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의 발전과 우리 상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 姜泰勳	고려대학교	2012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 통합적 시각에서의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견필	고려대학교	2012	
商事法研究 v.31-4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3	
株主總會想定問答集 : 平成25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3	
招集通知、議案の記載事例 : 平成25年版 / 商事法務(株)	商事法務(株)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La) notion de marché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 Maddalon, Philippe	L.G.D.J	2007	
Commerical and economic law in Ireland / White, Fidelma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Insurance law in Japan / Kobayashi, Noboru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公司金融法律原理 / 費倫	北京大學出版社	2012	
中國海事審判：2011 / 劉年夫	廣東人民出版社	2012	
中英商務合同精選與解讀 / 林克敏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 보고서 : 2012.12.11. - 12.16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양승태 대법원장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방문 결과 보고서 : 2012.8.18. - 8.30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2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 2012.11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 법적인 지위에 관한 연구 / 강경필	연세대학교	2012	
統合倒産法上 包括的 禁止命令과 管理人 先任에 대한 法的 考察 / 愼相洙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형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동현	연세대학교	2012	
국민과의 소통 : 모범사례 매뉴얼 / 한국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3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9·30차 회의 결과보고 . 11 / 한국 .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이용태도에 관한 연구 / 金民規	중앙대학교	2013	
부실채권 정리기금 백서(不實債權 整理基金 白書) . 1997-2012 v.1997-2012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013	
사법 v.23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3	
司法福祉學研究 v.1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1	
司法福祉學研究 v.2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2	
司法福祉學研究 v.3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3	
司法福祉學研究 v.4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4	
司法福祉學研究 v.5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5	
司法福祉學研究 v.6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6	
司法福祉學研究 v.7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7	
司法福祉學研究 v.8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8	
司法福祉學研究 v.9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09	
司法福祉學研究 v.10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10	
司法福祉學研究 v.11 / 日本司法福祉法學會	日本司法福祉法學會	2011	
商業登記總覽 . 5 : 書式編(3) / 登記制度研究會	新日本法規	2012	
Civil procedure in Finland / Niemi-Kiesilainen, Johanna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Civil procedure in Malawi / Chilenga, Marsha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Constitutional courts : a comparative study / Harding, Andrew	Wildy, Simmonds & Hill Publishing	2009	
European Civil procedure / Biavati, Paolo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Legal procedure and practice in Medieval Denmark / Andersen, Per	Brill	2011	
跨國破產法律制度研究 / 張媛	吉林大學	2012	
非訴訟程式(ADR)教程 / 範愉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中國司法制度 / 司法部法學教材編輯部	政法大學	2012	
證明責任 : 事實判斷的補助方法 / 肖建國	北京大學出版社	2012	
招標投標法律法規解讀評析 : 評標專家指南 / 陳川生	電子工業出版社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민사전자소송 실무편람 / 한국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2	
(L')injonction en droit public français / Perrin, Alix	Panthéon-Assas	2009	
民事訴訟法學專論 / 何文燕	湘潭大學出版社	2012	
民事訴訟證據制度研究 / 武文舉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人民調解法治新論 / 劉江江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 이종혁	고려대학교	2012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김한기	건국대학교	2012	
司法鑒定專家輔助人制度研究 / 常林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2	
證據法要論 / 周榮	政法大學	2012	
證據法學：問題與闡述 / 葉青	北京大學出版社	2012	
刑事辯護：國際標準與中國實踐 / 顧永忠	北京大學	2012	
刑事辯護的中國經驗：田文昌，陳瑞華對話錄 / 田文昌	北京大學出版社	2012	
刑事訴訟法 / 岡田朝太郎	政法大學	2012	
刑事訴訟法學 / 張旭	廈門大學	2012	
刑事推定的基本理論：二重國文題爲中心的理論闡釋 / 褚福民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契約上の 情報提供義務에 관한 研究 / 박주현	전남대학교	2012	
動産 讓渡擔保의 法的 構成에 관한 研究 : 동산·채권 등의담보에관한법률의 입법에 따른 재조명 / 손정현	고려대학교	2012	
民事法研究 v.20 / 호남민사법연구회	大韓民事法學會	2012	
부동산 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 정의훈	연세대학교	201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연구 / 崔祐領	고려대학교	2012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연갑	서울대학교대학원	2009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 吳一錫	고려대학교	2012	
일조방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 손윤하	한양대학교	201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희량	경상대학교	2013	
주택임차인 보호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오미진	제주대학교	2012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론 / 김민성	부산대학교	2013	
해약금에 관한 연구 : 계약해제를 중심으로 / 주광일	단국대학교	2012	
私法判例リマークス : 判例評論 v.46 / 日本評論社	日本評論社	2013	
Contract law in Poland / Machnikowski, Piotr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Contract law in the Netherlands / Hartkamp, Arthur 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Property and Trust Law in Spain / Sanchez Aristi, Rafael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歐洲示範民法典草案 : 歐洲私法的原則, 定義和示範規則 / 歐洲民法典研究組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擔保法 / 郭明瑞	政法大學	2012	
物業管理法規 / 魯捷	電子工業	2012	
物業管理法規 / 王錫耀	人民大學	2012	
民法總論 / 李永軍	政法大學	2012	
影視合同範本與風險防範 / 北京市律師協會	北京大學出版社	2012	
中韓城市房地產交易法律制度比較研究 / 金玄卿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合同法分則研究 : 上卷 / 王利明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現代民法基本問題 / 星野英一	上海三聯書店	2012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最高裁判所判例集 v.66-1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6-2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6-3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6-4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 v.66-5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最高裁判所判例集索引 v.65 / 日本, 最高裁判所	最高裁判所	2012	

• 법률비도서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2013-3 / 조세통람사 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조세총서 v.2013-2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2013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디지털도서관 v.2013-1 /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편]	201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7-1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24-1 /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2013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환경통계연감 v.2012-1 / 한국 . 환경부	환경부	2012	
환경통계연감 v.2012-2 / 한국 . 환경부	환경부	2012	
공무원인사백서 . 2008~2012 v.2008-2012 / 한국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3	
남·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 비교 분석 / 권상혁	부산대학교	2013	
통일백서 v.2013 / 한국 . 통일원	통일부	2013	
韓國統計年鑑 v.2012 / 통계청	統計廳	2013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산부인과학 : 지침과 개요 / 대한산부인과학회	군자출판사	2012	
한국의 특허 동향 : 2000-2011 v.2000-2011 / 특허청	특허청	2012	

• 법률 학술잡지목록 등

[국내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 통권 508호 (2013. 5)	대한건설협회	월간
2	國際法學會論叢 58卷 1號 (通卷 128號)	大韓國際法學會	부정간
3	기업법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52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4	노동법률 통권 260호 (2013. 1)	中央經濟社	월간
5	노동법률 통권 261호 (2013. 2)	中央經濟社	월간
6	노동법률 통권 262호 (2013. 3)	中央經濟社	월간
7	노동법률 통권 263호 (2013. 4)	中央經濟社	월간
8	노동법학 통권 45호 (2013. 3)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9	法과 政策研究 12집 3호 (통권 27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0	法과 政策研究 12집 4호 (통권 28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1	法과 政策研究 13집 1호 (통권 29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2	法學 54권 1호 (통권166호)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계간
13	司法行政 54권 4호 (통권 628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4	속보삼일총서 통권 1214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 통권 1215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 통권 1216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7	속보삼일총서 통권 1217호+별책부록 (2013. 4)	삼일회계법인	주간
18	시사저널 No.1225	(주)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26	(주)독립신문사	주간
20	신동아 2013년 5월+별책부록	동아일보사	월간
21	월간조선 2013년 5월	조선일보사	월간
22	월간중앙 2013년 5월	중앙일보사	월간
23	이나우스DB 2013년 3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4	이나우스DB 2013년 4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25	이코노미스트 No.118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18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18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이코노미스트 No.118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9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통권86호) (2013.3)	韓國情報管理學會	계간

30	종합물가정보 통권510호 I, II호+부록 (2013년 5월)	한국물가정보	월간
31	주간조선 No.2250	조선일보사	주간
32	주간조선 No.2251	조선일보사	주간
33	주간조선 No.2252	조선일보사	주간
34	주간조선 No.2253	조선일보사	주간
35	中央法學 15輯 1號 (통권 제47호)	중앙법학회	계간
36	地方自治法研究 13권 1호 (통권 37호)	새로문화	반년간
37	출판저널 Vol.447 (2013. 4)	출판저널	월간
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3. 3)	한국비블리아학회	연3회간
39	海事法研究 25卷 1號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간
40	헌법학연구 19권 1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41	現代文學 2013년 4월	현대문학사	월간
42	LAW & TECHNOLOGY 제9권 제2호 (2013. 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격월간
43	Legal Times Vol.57 (2013. 4)	(주)리걸타임즈	월간

[일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季刊)勞動法 240號	總合勞動研究所	계간
2	(旬刊)商事法務 1992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3	(旬刊)商事法務 1993號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4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3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5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4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6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5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7	(旬刊)商事法務 別冊 No.376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8	國家學會雜誌 126卷 1・2號	有斐閣	격월간
9	國際商事法務 41卷 3號 (通卷 609號)	國際商事法務研究所	월간
10	金融・商事判例 No.1411 増刊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1	金融・商事判例 No.1412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1965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3	金融法務事情 1966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4	勞動法律旬報 1787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5	勞動判例 No.1061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16	勞動判例 No.1062	産勞總合研究所	반월간
17	登記研究 780號 (2013. 2)	テイハン	월간
18	文藝春秋 2013年 4月號	文藝春秋	월간
19	法律時報 85卷 4號 (通卷 1058號)	日本評論社	월간
20	法律時報 別冊 No.46	日本評論社	부정기
21	法曹時報 65卷 3號	法曹會	월간
22	法學 76卷 6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23	法學志林 110卷 4號	法政大學	계간
24	法學協會雜誌 130卷 2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25	法學セミナー 58卷 4號 (通卷 699號)	日本評論社	월간
26	法學セミナー 別冊 No.221	日本評論社	부정기
27	司法福祉學研究第 1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28	司法福祉學研究第 2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29	司法福祉學研究第 3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0	司法福祉學研究第 4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1	司法福祉學研究第 5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2	司法福祉學研究第 6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3	司法福祉學研究第 7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4	司法福祉學研究第 8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5	司法福祉學研究第 9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6	司法福祉學研究第 10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7	司法福祉學研究第 11號	日本司法福祉法學會	연간
38	銀行法務 21 57卷 4號 (3月増刊號, 通卷 756號)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39	立教法學 87호	有斐閣	계간
40	罪と罰 50卷 2號 (通卷 198號)	大藏省印刷局	계간
41	阪大法學 62卷 6號 (通卷282號)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42	判例時報 2173號	判例時報社	순간
43	判例時報 2174號	判例時報社	순간
44	判例地方自治 364號 (2013. 3)	ぎょうせい	월간
45	判例地方自治 365號 (増刊號)	ぎょうせい	월간

46	判例タイムズ 1385號	判例タイムズ社	격주간
47	平和研究 22號 (1997. 11)	日本平和學會	연간
48	平和研究 23號 (1998. 11)	日本平和學會	연간
49	平和研究 24號 (1999. 11)	日本平和學會	연간
50	平和研究 25號 (2000. 11)	日本平和學會	연간
51	平和研究 27號 (2002. 11)	日本平和學會	연간
52	刑事法ジャーナル Vol.35 (2013)	イウス出版	계간
53	戸籍 880號	テイハン	월간
54	戸籍 881號	テイハン	월간
55	NBL 997號	商事法務	반월간
56	コピーライト Vol.53 No.624	著作権情報センタ	월간
57	ジュリスト 1452號	有斐閣	격주간
58	ジュリスト 別冊(金融商品取引法判例百選) NO.214	有斐閣	부정기
59	パテント 2012.別冊 8號 (65卷 13號(通卷 757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60	パテント 2013.別冊 9號 (66卷 3號(通卷 760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61	パテント 66卷 4號 (通卷 761號)	日本弁理士會	월간

[양서구입]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2 No.5	(The) Yale Law journal Co.,Inc.	연8회
2	(The)international lawyer Vol.46 No.4(2012 Winter)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3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4	Manz	반월간
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68 Heft.5	Manz	반월간
5	ABA(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Vol.99(2013. 4)	American Bar Association	월간
6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o.860	Thomson Reuters	격주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5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8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4 Hft.1	Mohr	격월간

9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ol.39 No.1	The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계간
10	BB(Betriebs-Berater) Jahrg.68 Nr.8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1	BB(Betriebs-Berater) Jahrg.68 Nr.9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2	BB(Betriebs-Berater) Jahrg.68 Nr.10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3	BB(Betriebs-Berater) Jahrg.68 Nr.1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14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02	BNA	주간
15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03	BNA	주간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12 (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13 (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14 (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15 (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7 (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8 (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간
22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3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6 Heft.2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4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1	Gieseking	월간
25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2	Gieseking	월간
2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1 Hft.3	Gieseking	월간
27	Der Spiegel 2013, Nr.12	Spiegel	주간
28	Der Spiegel 2013, Nr.13	Spiegel	주간
29	Der Spiegel 2013, Nr.14	Spiegel	주간
30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1 Nr.2	Carl Heymanns	월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1 Nr.3	Carl Heymanns	월간
32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3	Kohlhammer	반월간
33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4	Kohlhammer	반월간
34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5	Kohlhammer	반월간
35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6	Kohlhammer	반월간
36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4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7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5	Verlag Dr.Otto Schmidt Kln	격주간
38	Die Praxis 2013, Heft.1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9	Droit Social 2013, N.3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4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	Carl Heymanns	반월간
41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2	Carl Heymanns	반월간
42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3	Carl Heymanns	반월간
43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4	Carl Heymanns	반월간
44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5	Carl Heymanns	반월간
45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6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7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8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9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50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1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51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52	Familie und Recht Jahrg.24 Hft.3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53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5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반월간

54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6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cking GmbH	반월간
55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1	Wiley-VCH	월간
56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2	Wiley-VCH	월간
57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Jahrg.115 Nr.3	Wiley-VCH	월간
58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0 Hft.1	R.v.Decker	월간
59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2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0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3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1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4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2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5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63	Harvard Law Review Vol.126 No.5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연8회
64	Höchst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2 +Jahregister(2012)	Stollfuss	월간
65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8	BNA	주간
66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9	BNA	주간
67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10	BNA	주간
68	IPRax(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Jahrgang.33 Heft.1	Giesecking Verlag	격월간
69	IPRax(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und Verfahrensrechts) Jahrgang.33 Heft.2	Giesecking Verlag	격월간
70	Judicature Vol.96 No.3	AJS	격월간
71	Judicature Vol.96 No.4	AJS	격월간
72	Juristen Zeitung Jahrg.68 Nr.3	J. C. B. Mohr	반월간
73	Juristen Zeitung Jahrg.68 Nr.4	J. C. B. Mohr	반월간
74	Juristen Zeitung Jahrg.68 Nr.5	J. C. B. Mohr	반월간
75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2	C.H.Beck	월간
76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3 (Beilage zu Heft 3/2013)	C.H.Beck	월간

77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2	C.H.Beck	월간
78	Kritische Justiz Jahrg.46 Hft.1	Nomos	계간
79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95 Hft.4	Nomos	계간
80	La semaine juridique :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8	Juris-Classeur	주간
81	La semaine juridique :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9	Juris-Classeur	주간
82	La semaine juridique :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10-11	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8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9-10	Juris-Classeur	주간
85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7	Juris-Classeur	주간
86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8	Juris-Classeur	주간
87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9	Juris-Classeur	주간
88	La semaine juridique: édition générale 2013, N.10	Juris-Classeur	주간
89	L'actualité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7	dalloz	주간
90	L'actualité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8	dalloz	주간
91	L'actualité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9	dalloz	주간
92	L'actualité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10	dalloz	주간
93	L'actualité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3, N.11	dalloz	주간
94	Le Droit Ouvrier N.776(2013)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95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7 Hft.4	Otto Schmidt	반월간
96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7 Hft.5	Otto Schmidt	반월간
97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1-2	C. H. Beck	주간
9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Spezial.1	C. H. Beck	주간
9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4	C. H. Beck	주간
10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5+Spezial.2	C. H. Beck	주간
10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6	C. H. Beck	주간
10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7+Spezial.3	C. H. Beck	주간

10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8	C. H. Beck	주간
10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9+Spezial,4	C. H. Beck	주간
10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10	C. H. Beck	주간
10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11+Spezial,5	C. H. Beck	주간
107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1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8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2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09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10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4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11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5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12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3 Heft,1	C. H. Beck	월간
113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3 Heft,2	C. H. Beck	월간
11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2	C. H. Beck	반월간
115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3	C. H. Beck	반월간
116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4	C. H. Beck	반월간
117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5	C. H. Beck	반월간
118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6	C. H. Beck	반월간
119	NJ Neue Justiz Jahrg.67 Nr.1	Nomos	월간
120	NJ Neue Justiz Jahrg.67 Nr.2	Nomos	월간
121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1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2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3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3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4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4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5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5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6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6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7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8	Verlag C. H. Beck OHG	순간
128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3 No.1	Oxford Journals	계간
129	Public Law 2013, April	Sweet & Maxwell	계간
130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7 Heft.1	J. C. B. Mohr	계간
131	Recht der Arbeit Jahrgang.66 Heft.1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132	Recht und Politik Jahrg.49 Nr.1	Berliner Wissenschafts- Verlag GmbH	계간
133	Recueil Dalloz 2013, N.8	Dalloz	주간
134	Recueil Dalloz 2013, N.9	Dalloz	주간
135	Recueil Dalloz 2013, N.10	Dalloz	주간
136	Recueil Dalloz 2013, N.11	Dalloz	주간
137	Recueil des Cours No.351(2010)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138	Recueil des Cours No.352(2010)	Martinus Nijhoff Publishers	부정기
139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2012, N.4(10-12)	dalloz	계간
140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3/3	EFL (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141	Revue française de droit administratif 2012, No.6	Dalloz	격월간
142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No.234(2012)	RIDA	계간
143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2012, Nr.4	EDITIONS DALLOZ	계간
144	Stanford Law Review Vol.65 No.3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145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1	Luchterhand	월간
146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2	Luchterhand	월간
147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3 Heft.3	Luchterhand	월간
148	The Economist 2013.03.3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49	The Economist 2013.04.06	The Economist Group	주간
150	The Economist 2013.04.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151	The Economist 2013.04.20	The Economist Group	주간
152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3 No.3(2012)	NCSC	연3회
153	The law quarterly review Vol.129(2013, April)	Sweet & Maxwell	계간
154	The Modern Law Review Vol.76 No.2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155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27	NLP IP Company	주간
156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28	NLP IP Company	주간
157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29	NLP IP Company	주간
15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30	NLP IP Company	주간
159	Time 2013년 4월 8일	Time Asia	주간
160	Time 2013년 4월 15일	Time Asia	주간
161	Time 2013년 4월 22일	Time Asia	주간
162	Time 2013년 4월 29일	Time Asia	주간
163	Transportrecht Jahrgang.36 Heft.1	Luchterhand	월간
164	Transportrecht Jahrgang.36 Heft.2	Luchterhand	월간
165	Transportrecht Jahrgang.36 Heft.3	Luchterhand	월간
166	U,S News & World Report 2012. 9	U,S News & World Report	연2회
167	U,S News & World Report 2012. 11	U,S News & World Report	연2회
168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VRÜ) Jahrg.45 Hft.4	Nomos	계간
169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1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70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2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71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3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72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4	Verlag Versicherungswirtschaft	순간

173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5	Verlag Versicherung swirtsch aft	순간
17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6	Verlag Versicherung swirtsch aft	순간
175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7	Verlag Versicherung swirtsch aft	순간
176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8	Verlag Versicherung swirtsch aft	순간
177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7	WM Wirtschafts- und Bankrecht	주간
178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8	WM Wirtschafts- und Bankrecht	주간
179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9	WM Wirtschafts- und Bankrecht	주간
180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10	WM Wirtschafts- und Bankrecht	주간
181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63 Hft.3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182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24 Heft.4	Walter de Gruyter	계간
183	Zeitschrift für Europarecht, Internationales Privatrecht und Rechtsvergleichung Jahrgang.54 Heft.1	Manz	격월간
184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Rechts-wissenschaft (ZvglRWiss)Bd.112 Hft.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계간
185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1 Hft.1	RWS Verlag	연5회
186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8+Ewir 4	RWS	주간
187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9	RWS	주간
188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10+Ewir 5	RWS	주간
189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11	RWS	주간
190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12+Ewir 6	RWS	주간

[국내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家族法研究 - 第27卷 第1號(通卷46號)	한국가족법학회	연간
2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 제116호 (2013년 4월10일)	법원도서관	월간
3	鑑定評價 - 통권109호 (2013년 Spring)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계간
4	江原法學 - 第38卷(I) (2013. 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정간
	江原法學 - 第38卷(II) (2013. 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정간
5	慶星法學 - 第21輯 第1號 (2012. 7)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반년간
	慶星法學 - 第21輯 第2號 (2012. 12)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반년간
6	경찰학연구 - 제13권 제1호 (통권 제33호)	경찰대학	반년간
7	고려법학 - 제68호 (2013. 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간
8	空軍法律論集 - 제17집 제2호 (통권40호, 2013년 3월)	공군본부	반년간
9	과학기술법연구 - 19집 1호 (2013. 2)	한남대학교	연간
10	과학기술정책 - 제23권 제1호 (통권 제190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정간
11	교정연구 - 58號 (2013. 3)	한국교정학회	연간
12	국세 - 554號 (2013.4)	세우회	월간
13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3 (2013. 3)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14	국회도서관 - 제50권 제2호, 통권401호 (2013. 3)	국회도서관	월간
15	국회보 - 제557호 (2013. 4)	국회사무처	월간
16	국회입법조사처보 - 통권16호 (2013. 봄호)	국회입법조사처	계간
17	금융통계월보 - 2013년 2월호	금융감독원	월간
18	기록인 - 2013. Spr.(Vol.22)	국가기록원	계간
19	기업지배구조 리뷰 - 제67호 (2013년 3/4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격월간
20	勞働法研究 - 제34호 (2013. 상반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반년간
21	노동정책연구 - 제13권 제1호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계간
22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39호 (2013년 3월 18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40호 (2013년 3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41호 (2013년 4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42호 (2013년 4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43호 (2013년 4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444호 (2013년 4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간

23	미네르바 - 통권399호 (2013년 3월15일)	사법연수원	월간
24	發明特許 - 2013. 03/04 (vol.439)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25	법률구조 - 통권82호 (2012년 겨울)	대한법률구조공단	계간
	법률구조 - 통권83호 (2013년 봄)	대한법률구조공단	계간
26	法務士 - 2013년 4월호 (통권550호)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27	법원공보 - 통권1421호 (2013년 4월 1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법원공보 - 통권1422호 (2013년 4월 15일)	법원행정처	격주간
28	法制 - 통권 제659호 (2013. 4)	법제처	월간
29	법제소식 - 2013년 4월호	법제처	월간
30	法曹 - (通卷679號) (2013. 4)	法曹協會	월간
31	法學論攷 - 제41집 (2013. 2. 2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간
32	法學研究 - 第16輯 第1號 (2013. 3)	인하대학교	부정간
33	法學研究 - 제21권 제1호 (2013. 1)	경상대학교	부정간
34	法學研究 - 第49輯 (2013. 3)	한국법학회	연3회
35	比較私法 - 제20권 1호 (통권 제6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반년간
36	上場 - 2013. 4월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37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86호 2013년 3월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38	誠信法學 - 제12호(2012)	성신여자대학교	연간
39	損害保險 - 532號 (2013. 3)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
40	言論仲裁 - 2013 봄호 (통권126호)	언론중재위원회	계간
41	외법논집 - 제37권 제1호 (2013. 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반년간
42	월간 노동리뷰 - 통권97호 (2013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43	인권 - 통권79호 (2013. 3/4)	국가인권위원회	격월간
44	저스티스 - 통권 제135호 (2013. 4)	한국법학원	격월간
45	著作權 - 논문색인집(특별부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부정간
46	著作權 - vol.26 no.1 (2013 Spr. 제10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계간
47	저작권문화 - 통권224호 (2013년 4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48	조사통계월보 - 2013년 3월호	한국은행	월간
49	조세 - 299號 (2013. 4)	조세통람사	월간
50	조정과심판 - 2012년 겨울호 제51호	중앙노동위원회	계간
51	仲裁 - 339호 (2013년 봄·여름)	대한상사중재원	계간

52	지가동향 - 2013. 2월분	건설교통부	월간
53	지식재산 정책 = IP Policy - Vol.13(2012.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계간
	지식재산 정책 = IP Policy - Vol.14(2013.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계간
54	최신외국법제정보 - 2013년 제1호	한국법제연구원	격월간
55	土地補償法研究 - 제13집 (2013. 2)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연간
56	판례공보 - 통권414호 (2013년 3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15호 (2013년 4월 1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판례공보 - 통권416호 (2013년 4월 15일)	법원도서관	반월간
57	한국통계월보 - 제55권 제3호(2013. 3)	통계청	월간
58	漢陽法學 - 제24권 제1집 통권 제41집 (2013. 2)	한양대학교	연간
59	海洋韓國 - 474호 (2013. 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海洋韓國 - 475호 (2013. 4)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60	行政論叢 - 51권 1호(2013. 3)	서울대학교	반년간
61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6호(2013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197호(2013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	월간
62	헌정 - 통권370호 (2013년 4월)	대한민국 헌정회	월간
63	刑事法の 新動向 - 통권38호 (2013년 3월)	대검찰청	격월간
64	홍익법학 - 제14권 제1호 (2013. 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간

[일서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法曹 - 第750號 (2013. 4)	法曹會	월간
2	自由と正義 - 64卷 2號 (2013. 2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自由と正義 - 64卷 3號 (2013. 3月號)	日本辯護士聯合會	월간
3	比較法學 - 第46卷 第3號 (通卷 第100號)	早稻田大學校 比較法研究所	계간
4	知財管理 - vol.63 no.4 (no.748)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5	法學研究 - 제48권 제3호(138) (2012 12월)	北海學院大學	계간
6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 - 第42號	北海道大學大學院法學	년간

7	早稻田法學 - 第88卷 第1號	日本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早稻田法學 - 第88卷 第2號	日本早稻田大學法學會	계간
8	裁判所時報 - 第1573號 (平成24年 3月 1日)	日本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74號 (平成24年 3月 15日)	日本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75號 (平成24年 4月 1日)	日本最高裁判所	반월간
	裁判所時報 - 第1576號 (平成24年 4月 15日)	日本最高裁判所	반월간

[대만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司法院公報 - 第55卷 第2期(2013. 2)	臺灣 司法院	월간

[영미서 수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Columbia law review - v.113 no.2 (2013. Mar.)	University of Columbia	격월간
2	Duke law journal - v.62 no.6. (2012 Apr.)	Duke University	격월간
3	Harvard law review - v.126 no.5	University of Harvard	격월간
4	Canada Supreme Court Reports-no.562 (2012. vol. 2 part.3)	Canada Supreme Court	부정간
	Canada Supreme Court Reports-no.563 (2012. vol. 3 part.1)	Canada Supreme Court	부정간
5	Cornell law review - v.98 no.3 (2012. Mar.)	University of Cornell	격월간
6	Texas law review - vol.91 no.4 (2013. Mar.)	University of Texas	격월간

